

#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칙

2018.03.19.	제정	2019.01.14.	전부개정
2019.03.27.	일부개정	2019.09.05.	일부개정
2020.01.28.	일부개정	2022.09.08.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08.31.	일부개정
2024.04.27.	일부개정	2025.04.18.	일부개정
2025.06.23.	일부개정	2025.09.08.	일부개정
2025.12.19.	일부개정	2026.04.03.	일부개정

## 전 문

제1장 총칙.....	1~14
제2장 학생총회.....	15~22
제3장 학생총투표.....	23~32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33~44
제5장 확대운영위원회.....	45~53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54~65
제7장 총학생회장단.....	66~76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77~80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81~88
제10장 감사운영위원회 .....	89~93
제11장 단과대학 학생회.....	94~101
제12장 학부(과)-전공 학생회.....	102~109
제13장 동아리연합회.....	110~117
제14장 재정 .....	118~126
제15장 선거 .....	127~132
제16장 징계 .....	133~138
제17장 회칙개정.....	139~140

##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문

대학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여  
민주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지성인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설립된 신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창학의 이념으로 두고 있다.

2018년 1 월 1 일, 새로이 출범한 신한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의 목적과 학원의 이념을 기초로 하되,  
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 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그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칙을 공표하는 바이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대학 문화 창출과 자율적 발전 도모에 있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진리 탐구와 학문, 사상의 자유를 통해 사회와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신한대학교 행함관에 둔다.

###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 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 ③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은 준회원이 된다.
- ④ 회원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목적에 위배 또는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하여금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 개진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회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관련된 학교 운영에 대하여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갖는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인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⑤ 징계의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변호를 위해 학교 당국의 징계위원회에 참석, 변론할 수 있다.
- ⑥ 본회의 회원은 총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⑧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구성)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독립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3. 산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과)·전공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독립기구: 감사운영위원회
5. 상설위원회
6. 특별위원회

### 제7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④ 본칙의 권위는 오직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으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8조(학교 운영에의 참여)** 본회는 대학의 자주화와 자율적 운용을 위해 학교 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① 학생의 자치 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 ② 학생 권익과 밀접한 사항
- ③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
- ④ 학사 일정 수립에 대한 참여
- ⑤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9조(대표자의 책임)** 제6조 제1항을 구성하는 모든 인원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 금지)**

-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1. 총학생회장단
  - 2.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 3.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 4. 동아리연합회장단
  - 5. 감사운영위원장
  - 6.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 1. 중앙집행위원
  - 2. 각 단과대학 집행위원
  - 3. 각 학부(과)·전공 집행위원
  - 4. 동아리연합회 각 분과장
  - 5. 감사운영위원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겸직 금지 기준을 학생 임원 장학금 수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수혜자는 겸직이 가능하다.
- ④ 학생 임원 장학금을 수혜받는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본칙 제134조 제5항 제6호에 따른다.

**제11조(세칙 및 규칙)**

- ① 본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칙과 규칙을 별도로 구성한다.
- ② 회칙의 우선순위는 본칙, 세칙, 규칙으로 하며, 충돌 시 상위 규정을 우선시한다. 또한, 산하 기구들은 본칙을 우선한다.
- ③ 본칙과 세칙 또는 본칙과 규칙이 충돌할 시에는 본칙을 우선한다.

- ④ 세칙과 규칙이 충돌할 때는 세칙을 우선한다.
- ⑤ 세칙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각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하위 규정에 따른다. 본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세칙에서,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서 따른다. 단, 세칙이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건 해석을 따른다.

**제12조(사무 처리)**

- ① 본회의 각 기구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본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④ 본칙에서 공고하도록 한 사항은 회원들이 해당 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총학생회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 관리)**

- 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기구 정기 회의록 및 예·결산안을 필수 기록물로 지정하고 그 외 기획안, 참고자료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보충 자료들을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④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⑤ 본회가 생산·수집하는 필수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언제든지 공개되어야 하고 추가 기록물의 경우, 별도 요청에 의하여 본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 및 열람이 가능하며 본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⑥ 회의록의 경우, 개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134조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⑦ 회의록은 본회의 의결기구에서 인준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 양식은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기구와 공유한다.
- ⑧ 본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만 열람·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 ①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③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제2장 학생총회**

**제15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6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결정권
2.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결정권
3. 학생자치단체 관련 학칙 개정 촉구안 발의권
4. 학생총투표 시행 결정권
5. 이외의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결정권

**제18조(안건 위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학생총회 개회 불발 또는 중도 폐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 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2/3 이상의 소집 요구
  3.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
  4. 본회 회원 1/15 이상의 소집 요구
- ② 긴급 총회는 의장의 판단하에 소집 가능하다.

**제20조(소집공고)**

- ① 의장은 학생총회 소집을 개회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소집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2. 개회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21조(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과 준회원의 1/10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장)**

-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의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유고 시 혹은 직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 혹은 제75조 제5항의 권한 대행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23조(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4조(투표권)** 본회 정회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제25조(시행)** 학생총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1. 학생총회의 시행 결정
2. 본회의 의결기구의 시행 결정
3. 11월 총선거 관련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시행 결정

**제26조(시행 공고)**

-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27조(의결)**

- ① 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의 과반수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소속 학과·학년의 특수한 사정이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본교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자는 제1항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③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정회원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8조(투표 기간)**

- ① 투표 기간은 최소 3일로 정한다.
- ②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정회원의 40%를 넘지 않을 경우,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최장 4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제29조(결과 공고)**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0조(효력)**

-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총투표의 결과에 따라 본회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결과를 임의 변경, 번복, 첨가 및 삭제를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제31조(투표관리위원회)**

-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의 탄핵안에 대한 투표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학생총회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 결과를 공지할 의무를 가지며, 개표를 책임진다.
- ④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투표관리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한다. 각 지역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에 소속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권자로 구성한다.
- ⑤ 지역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투표관리를 담당한다.
-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 ⑦ 투표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⑧ 학생총회 의장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32조(안건)**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한다.

1. 학생총회의 시행 결정에 따른 안건
2. 본회의 의결기구의 시행 결정에 따른 안건
3. 11월 총선거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3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학생총회 다음 단계의 의결기구이다

**제34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자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의 경우 발언권은 존재하되, 의결권이 제한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회
3.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4. 각 단과대학 집행위원회 부장단
5. 각 학부(과) 전공 학생회장단
6. 각 학부(과) 전공 집행위원회 부장단
7. 동아리연합회장단
8. 동아리연합회 각 분과장 및 그에 준하는 직책
9. 감사운영위원회

**제35조(대표자의 의무)**

- ① 대표자는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대표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대표자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36조(소집)**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 임시 회의와 긴급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 개최 일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 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1/5 이상의 소집 요구
  3.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 ④ 긴급회의는 의장의 판단하에 소집 가능하다.

**제37조(대표자의 결석)**

- ① 대표자가 사고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결석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결석 사유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최 일의 다음 날 이후 평일 3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이외에 제출 시 반려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 사유서가 정당한 지에 대해 심의한다.
- ④ 대표자가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 사유서를 제출한 때 외에는, 무단결석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결석 사유서의 작성은 총학생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총 개최 수 중 1/2 이상 불참한 경우, 제134조 제5항에 따른다. 단,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38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자치단체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칙 내 세칙 개정안 및 제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4. 학생총회 안건 상정 및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5.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6. 총학생회비 상세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7. 본회의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8. 본회의 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9. 본회의 결산을 보고받을 수 있다.
10.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결산안을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으며 심의·의결은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한다.
11.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12.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결산을 보고받을 수 있다.
13. 특정 안건에 대한 중앙운영위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14. 본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15. 본회의 산하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16. 본회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학교 당국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17.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8.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9. 감사운영위원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탄핵 부의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20. 감사운영위원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한다.
21. 중앙집행위원, 감사운영위원, 단과대학 집행위원의 해임을 심의하며, 중앙집행위원, 감사운영위원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1/2 이상의 찬성, 단과대학 집행위원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1/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2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경우, 직전 회기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서면결의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3. 감사운영위원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24. 그 외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제39조(안건 위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불발 또는 중도 폐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개회 및 의결)**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제34조에 해당하는 대표자를 재적인원으로 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의 탄

핵부의안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의 탄핵부의안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총투표에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을 상정한다.

#### 제41조(의장)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유고 및 궐위 시 혹은 직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 제42조(소집공고)

①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회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2. 개회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43조(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과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44조(참관)

① 본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참관 권한을 갖는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34조를 제외한 출석인원은 참관인으로 하며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단, 의장은 판단하에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장 확대운영위원회

#### 제45조(지위)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불발 또는 중도 폐회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②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46조(구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대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3.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장
4. 동아리연합회장
5. 감사운영위원장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확대운영위원이 확대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개회 직후 인준을 받아 부회장 및 부위원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학생회장단 및 위원장단 모두 불참 시, 제48조에 따라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생회장단이 모두 불참할 경우 부장 및 위원이 대표자로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된다.

**제47조(확대운영위원의 의무)**

- ① 확대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확대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소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확대운영위원은 대표로서 직무에 책임을 갖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확대운영위원회 총 개회 수 중, 1/3 이상 불참할 경우 제134조 제5항에 따른다. 단,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8조(확대운영위원의 결석)**

- ① 확대운영위원이 사고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결석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결석사유서는 확대운영위원회 개회 일의 다음 날로부터 평일 3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 이외에 제출 시 반려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 사유서가 정당한 지에 대해 심의한다.
- ④ 확대운영위원이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 사유서를 제출한 때 외에는, 무단결석한 대표자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결석사유서의 작성은 총학생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의장)**

- ①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유고 및 궐위 시 혹은 직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 혹은 제75조 제5항의 권한대행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50조(업무)**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확대운영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불발 또는 중도 폐회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지위와 결정권을 위임받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2. 방학 중이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 긴급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3. 총학생회 사업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 내 각 국서의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4. 그 외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제51조(소집)**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불발
-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도 폐회
- 3. 의장의 소집 요구
- 4.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

**제52조(개회 및 의결)**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3조(안건 위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확대운영위원회의 개회 불발 또는 중도 폐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제54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기구로서,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다.

### 제55조(구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의결권은 제한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장
-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개회 직후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 제56조(중앙운영위원회의 의무)

- ①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은 대표로서 직무에 책임을 갖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에 4회 이상 불참할 경우 제134조 제5항에 따른다. 단,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57조(중앙운영위원회의 결석)

- ① 중앙운영위원이 사고로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결석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결석 사유서는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 사유서가 정당한 지에 대해 심의한다.
- ④ 중앙운영위원이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 사유서를 제출한 때 외에는, 무단결석한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속 기구에 결석 사실을 공고하고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결석 사유서의 작성은 총학생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제58조(의장)

- ①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유고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유고 및 궐위 시 혹은 직무정지 처분의 경우, 제61조 제3항 제2호와 같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운영위원회 개

회 직후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통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의장은 직접 혹은 중앙집행위원회 중 1인을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59조(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연서를 통한 중앙집행위원 및 단과대학 집행위원의 해임부의안을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부결된 대표자의 해임부의안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연서를 통한 본칙의 개정안을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 심의·의결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4. 중앙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에 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 중앙집행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예산, 결산을 심사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 학생총회 준비를 조직한다.

3. 총학생회칙 내 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의결력에 있어 제38조 제3호를 우선으로 따른다.

4. 학생총투표 시행일을 결정하고 준비 및 진행을 조직한다.

5.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6.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7. 본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1조(소집)**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 긴급회의를 둔다.

② 정기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 회의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정기 회의는 총학생회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개최 전 중앙운영위원들에게 회의 장소의 변경이 공지되어야 한다.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 요구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

④ 긴급회의는 의장의 판단 하에 소집이 가능하다.

**제62조(개회 및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63조(상설위원회)

- ① 특별위원회의 존재 의의가 상설적인 기구로서 명확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상설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명시된 겸직은 금지한다.
- ③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내부에서 선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일부 독립된 자주성을 보장하며, 매년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⑤ 상설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자치적인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 ⑥ 상설위원회는 차기 연도 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 ⑦ 상설위원회가 총학생회비의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예산안을 인준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⑧ 상설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원 명단 및 활동 내역, 결산안을 보고해야 한다.
- ⑨ 상설위원회는 임기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다.
- ⑩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인준에 의해 상설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
  1. 본회 목적의 불이행
  2. 직무유기
  3. 위원회 존속의 불필요
- ⑪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특별위원회의 조항에 따른다.

### 제64조(특별위원회)

- ① 본회의 회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부에서 선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총학생회비의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원 명단 및 활동 내역, 결산안을 보고해야 한다.
- 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다.
-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임기 종료 후, 정기 회의를 통해 해당 특별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임명을 심의·의결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통해 차기 연도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부결이거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체한다.
- ⑦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제6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정기 회의를 통한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 가결
  2. 의장의 설치 요구
  3.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설치 요구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

1. 임기 종료 전 특별위원회의 목적 달성
2. 임기 종료 전 특별위원회의 업무 해결
3. 본회 목적의 불이행
4. 직무유기
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설위원회 임명 인준 불통과
6.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임명 의결 결과 부결

## 제7장 총학생회장단

### 제66조(지위)

-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으며,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활동 및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학교 당국을 비롯한 학내 여타 단체의 회의에 모든 학생의 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다.

### 제67조(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후 익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이하 각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임기도 이에 준한다.

### 제68조(총학생회 업무 인계)

- ① 총학생회장단 당선자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해 당선 공고 후, 48시간 이후부터 총학생회 업무 인계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경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 인계를 실시한다.
- ② 총학생회 업무 인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포함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전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분석
  3. 후임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4.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기타 업무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9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임기 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70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의장이 된다.

### 제71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 ①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②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내 국서의 국장, 국원과 부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③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내 국서를 지휘와 감독한다.
- ④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된 집행 사항을 변경 또한 취소할 수 있다.
- ⑤ 총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단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3항, 제64조 제5항을 적용한다.

### 제72조(대외적 권한)

- ① 총학생회장은 학교 행정 문제에 대해 본회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대변할 수 있으며, 학교 당국에 본회 회원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무)**

-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제74조(사퇴)**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의식불명, 혼수상태,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궐위 공고를 진행한다.

**제75조(탄핵)**

-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과반수의 연서
  - 2. 본회의 회원 1/20 이상의 연서
- ③ 제2항의 연서가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회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⑤ 제2항의 연서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즉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제2항의 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 ⑦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안의 학생총투표 부의 의결 후, 탄핵안은 제27조에 따라 의결한다.
- ⑧ 총학생회장만 탄핵된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⑨ 탄핵안 가결 후 제5항의 권한대행은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당선 혹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출 전까지의 임기를 갖는다.

### 제76조(직무정지)

- ① 제75조 제5항의 경우, 탄핵안이 발의된 제75조 제1항의 대상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안의 부의가 부결되거나, 학생총투표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때, 제75조 제5항의 임시의장은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탄핵부의안 부결 및 학생총투표 탄핵안 부결 시, 제75조 제1항의 대상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며, 제75조 제5항의 임시의장의 권한대행은 즉시 임기를 종료한다.

##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제77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78조(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사 결정권은 총학생회장이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중앙집행위원을 구성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내 국서의 국장
  2. 중앙집행위원회 내 국서의 국원
  3. 중앙집행위원회 내 국서의 부원

### 제79조(업무)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개최·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제작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⑤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⑥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 산하기구 집행위원회의 계열별 회의를 들 수 있다.

제80조(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요구로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 제81조(설립위원회)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사유가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선정해야 하며, 제2차 회의에서 간선 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는 비

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은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후 7일 이내 실시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체된다.

1. 후보자 정보, 투표 방식, 투표 결과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과정
2. 선출자 정보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결과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체 공지

#### 제82조(지위)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총학생회장단이 꺾일 때
2.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3.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하며 총학생회 기수를 유지·존속 또는 승계한다.

#### 제83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과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되며 차기 연도 학생회장단선거가 무산된 시점에서 14일 이내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과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의 인사 결정권은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진다.

**제84조(선출 공고)** 선출 공고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즉시 하고 선출 과정과 결과(선출자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85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재보궐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시에는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86조(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탄핵 및 직무정지를 제외한 제7장에 명시된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지위·권한·임기·의무를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사퇴는 제74조에 준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은 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부위원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1/4의 연서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연서
3.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

⑤ 제4항의 연서가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48시간 이내

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4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회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⑦ 제4항의 연서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즉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제4항의 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출된 임시의장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⑧ 본조 제7항의 경우, 탄핵안이 발의된 본조 제3항의 대상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안의 부결되기 전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때, 본조 제7항의 임시의장은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안 심의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비상대책위원장만 탄핵된 경우 비상대책부위원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⑪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제7항의 권한대행은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당선 혹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출 전까지의 임기를 갖는다.

**제87조(업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제80조에 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88조(해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와 동시에 해체하고 이를 공고한다.

## 제10장 감사운영위원회

**제89조(지위)** 감사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 및 각 산하기구 등의 회계 감사를 통하여 구성원의 효율적인 감사와 각 학생자치기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여 자치기구로서의 신뢰와 올바른 대학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기구이다.

### 제90조(업무 및 권한)

① 감사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 및 각 산하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감사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운영세칙]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 제91조(구성)

① 감사운영위원회의 인사결정권은 감사운영위원장이 가진다.

② 감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호는 본교에 설치된 단과대학 수와 동일하게 정원을 구성하며, 제3호의 정원 충족 시 제4호는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사운영위원장
2. 감사운영부위원장
3. 감사운영위원
4. 임시 감사운영위원

③ 제2항 3호의 경우, 동일 단과대학 소속의 위원은 1인으로 제한한다.

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학생 임원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 **제92조(위원장단)**

- ① 감사운영위원장은 감사운영위원회의를 대표하며, 감사운영위원회회의의 의장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② 감사운영부위원장은 감사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가 되고, 감사운영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을 대행한다.
- ③ 감사운영위원장은 감사운영위원회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④ 감사운영위원장은 임기 만료나 사퇴, 본칙 제38조에 의한 탄핵을 제외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⑤ 감사운영위원장은 [감사운영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93조(감사운영세칙)** 그 밖에 감사 및 감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감사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11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94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총학생회 산하기구이다.

#### **제95조(직무 및 권한)**

- ①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단과대학 학생회의 모든 기구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제96조(회장단)**

- ①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을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 및 확대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②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가 된다.
- ③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의결기구를 개회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④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학 정회원의 투표를 원칙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 ⑤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제97조(의결기구)**

- ① 단과대학 학생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의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단과대학 학생총투표는 단과대학 학생총회의의 의결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③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단과대학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자로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1.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2.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3. 그 외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생대표위원

④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으로써, 단과대학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독립대학의 경우 제5항을 따른다.

1.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2.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전공 학생회장

⑤ 독립대학의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독립대학 단과대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결산안 보고 및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1.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2.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년 대표

⑥ 각 의결기구의 업무와 권한, 운영 등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제98조(집행기구)**

- ①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②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진행한다.
- ③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총회, 단과대학 학생총투표,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개최·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제작한다.
- ⑤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제99조(회칙)**

- ① 회칙은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춰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해당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단과대학 학생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단, 본칙에 위배 또는 충돌하는 조항은 제·개정할 수 없다.
- ② 단과대학 학생회칙 조항이 본칙에 위배되거나 충돌할 경우, 해당 조항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단과대학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단과대학 학생회칙의 부재 혹은 부실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해당 단과대학 의결기구의 의결로 단과대학 학생회칙의 일부 혹은 전부를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⑤ 단과대학의 모든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 **제100조(재정)**

- ① 단과대학 학생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 배당금과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② 총학생회비의 배당금은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의한 배분율에 따른다.
- ③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의한 배분율의 지분 협상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④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 예산안을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단,

독립대학 단과대학은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 ⑤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 결산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단과대학 학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비 집행에 관한 예·결산안을 공개 및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으며 심의·의결은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한다.
- ⑦ 단과대학 학생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본회 회원들에게 예·결산안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4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⑧ 학과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예·결산안의 심의·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단위가 있을 경우,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⑨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 **제101조(비상대책위원회)**

- ① 단과대학 학생회는 차기 연도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무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 ② 선출 방법과 구성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칙을 따른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 확대운영위원회
  3. 중앙운영위원회
- ④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예산 집행을 허용하되,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 **제12장 학부(과)·전공 학생회**

**제102조(지위)** 학부(과)·전공학생회는 각 학부(과)·전공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총학생회 산하기구이다.

#### **제103조(직무 및 권한)**

-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해당 학부(과)·전공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모든 기구는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제104조(회장단)**

-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을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 및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② 학부(과)·전공 부학생회장은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가 된다.
- ③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학부(과)·전공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④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은 해당 학부(과)·전공 정회원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 ⑤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은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제105조(의결기구)

- ① 학부(과)·전공 학생총회는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총투표는 학부(과)·전공 학생총회의 의결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③ 각 의결기구의 업무와 권한, 운영 등은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제106조(집행기구)

- ①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는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②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는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는 학부(과)·전공 학생총회, 학부(과)·전공 학생총투표의 개최·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제작한다.
- ⑤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는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학부(과)·전공 학생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7조(회칙)

- ① 회칙은 각 학부(과)·전공의 특성에 맞춰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이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총회를 통해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단, 본칙에 위배 또는 충돌하는 조항을 제·개정할 수 없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가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이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의 부재 혹은 부실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해당 학부(과)·전공 의결기구의 의결로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과대학 학생회칙 혹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④ 학부(과)·전공의 모든 사항은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 제108조(재정)

-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재정은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해당 학부(과)·전공 회원에게 예·결산안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4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③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예·결산안은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정하는 서식을 따른다.

#### 제109조(비상대책위원회)

-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차기 연도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무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부(과)·전공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 ② 선출 방법과 구성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학생회칙을 따른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 확대운영위원회

### 제13장 동아리연합회

**제110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창조적 대학 문화의 창달을 위한 동아리들의 연합체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총학생회 산하기구이다.

**제111조(구성)**

- ①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아리 및 회원들로 구성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의 유형과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112조(분과·분과장)**

- ①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같은 분야의 동아리 연합 조직을 분과라고 칭한다.
- ② 분과장은 각 분과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가 된다.
- ③ 분과장의 업무와 권한, 선출, 의무 등은 동아리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113조(회장단)**

-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 및 확대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② 동아리연합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가 된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④ 동아리연합회장단은 총학생회칙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 ⑤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은 동아리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114조(업무)**

- ① 동아리연합회는 본회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는 본회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③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아리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115조(회칙)**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 의결기구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동아리연합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단, 본칙에 위배 또는 충돌하는 조항은 제·개정할 수 없다.

**제116조(재정)**

- ①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 배당금과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② 총학생회비 배당금은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의한 배분율에 따른다.
- ③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의한 배분율의 지분 협상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④ 동아리연합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을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 ⑤ 동아리연합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결산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산안을 보고해야 한다.
- ⑦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결산안을 본회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⑧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117조(비상대책위원회)**

- ① 동아리연합회는 차기 연도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무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 ② 선출 방법과 구성에 관해서는 각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칙을 따른다.
- ③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 집행을 허용하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 제14장 재정

**제118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19조(자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1.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2.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서 취득한 것
3.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진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제120조(수입)** 본회 재정의 수입은 총학생회비, 학교 지원금, 수익사업 구입, 기타 수입금, 기부금으로 한다.

**제121조(회계 연도)**

- ① 총학생회비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을 구분하여 각각 예산과 결산을 처리한다.

**제122조(총학생회비)**

- ① 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연도 총학생회의 납부 방침을 따를 수 있다.
- ② 총학생회비 환불은 회원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자퇴, 재적, 편입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외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며, 그 외의 세부 사항은 당해 총학생회의 정책에 따라 진행한다.
- ③ 총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④ 총학생회비 집행의 변동은 본 회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23조(예산)**

- ①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의 예산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단, 단일대학 단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 부득이한 예산 집행의 필요가 있거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불발로 인해 예산안 의결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내역과 사용 목적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 ③ 예산안 심의·의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회칙에 따른 의결기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예산 집행 시에는 모든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산하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모든 경비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⑤ 그 외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의결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여 민주적으로 처리한다.

**제124조(결산)**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학기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제125조(정보공개)**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모든 경비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②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는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 정보를 학생이 열람 가능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장 및 감사운영위원장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예·결산안의 모든 항목은 사실에 근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준에 미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제15장 선거

**제127조(선거 원칙)**

- ① 본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동아리연합회장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장 하에 동일 동시에 진행된다.

**제128조(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제129조(입후보자)**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입후보 자격은 학교 당국의 규정집을 따른다.
-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2인 1조가 되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11월 총선거에 앞서 단위별 1명을 선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단, 총학생회장이 공석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시로 1인을 선정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31조(당선자 결정 방법)**

- ①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과반수의 투표로 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투표 결과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장 투표를 실시한다.
- ③ 연장 투표의 연장 일수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2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16장 징계

**제133조(목적)** 징계의 목적은 본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여 반성과 전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후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생 자치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제134조(징계의 종류)

-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산하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가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제1호는 그 방법을,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 ③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제1호는 그 방법을, 제2호 및 제4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산하기구 회장단에 대한 사퇴 권고
  5. 산하기구 자격 박탈
- ④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제1호는 그 방법을,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3. 해체
-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정지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자격 정지 (단, 중앙운영위원을 겸하는 대표자는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
  4. 학생 임원 장학금 10% 감면
  5. 학생 임원 장학금 30% 감면
  6. 학생 임원 장학금 50% 감면
  7.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제명 (단, 중앙운영위원을 겸하는 대표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제명한다.)
- ⑥ 현재 총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 ⑦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2. 직무정지
  3. 중앙집행위원회 전체 예산의 삭감
  4. 해임
- ⑧ 징계의 종류 및 예산의 삭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서 정한 총학생회비 운용 단위 배분을 중 일부 혹은 전체 비율을 의결하여 예산을 삭감한다.
  2. 징계로 인해 삭감된 예산은 차기 연도 총학생회비 이월금으로 편입하며, 당해 연도 예산으로 사용·배당할 수 없다.
  3. 예산의 삭감은 징계 대상의 회장 및 위원장의 임기 종료 후 그 징계가 해제된다.
  4.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경우, 예산의 삭감으로 징계를 처분하지 아니한다.
- ⑨ 감사에 관한 징계 조치는 [감사운용세칙]에 따르며,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중 장학금 감면 및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하여 총학생회는 해당 내용을 공식 SNS 및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징계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종류는 징계 대상의 회장 및 위원장의 임기 종료 후 그 징계가 해제되며, 다음 각 호에 기재하지 않은 징계의 종류는 제137조 제1항에 의거해 의결된 기간 후 해제된다.

1. 제134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
2. 제134조 제4항 제2호
3. 제134조 제7항 제3호

**제136조(징계의 의결)**

- ① 제13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의결한다.
- ② 징계의 의결은 제40조에 의거해 진행한다
- ③ 대상 및 징계 대상이 속한 단위의 대표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전, 징계 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 ⑥ 제134조 제9항의 징계 의결은 감사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연서에 의해 징계 조치 재심의를 관한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137조(징계사유)**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의결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총학생회칙 위배
  3. 의결기구 무단결석
  4.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서 정하는 내용
  5.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내용
  6. 본회의 [감사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내용

7.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사유로 판단되는 부분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칙에서 정하는 징계로 개선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대상에 대한 학적상 징계처분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학생팀에 건의한다.

**제138조(효력)** 징계의 효력은 제134조에 의한 의결 즉시 발생한다.

## 제17장 회칙개정

**제139조(개정안 발의)** 본회 회칙개정 발의는 다음에 의한다.

1.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확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140조(결정)** 회칙개정 발의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회칙개정 발의 7일 이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 의장의 판단하에 긴급 소집이 가능하다.